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791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1]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98)

####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①(주)에스에스케이(김황호), ②(주)도심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  
무소(김왕선)

나. 전화번호: ①032-518-9311, ②031-345-5200

2. 명칭: 실내 열회수와 히트펌프를 이용한 냉·난방, 제습, 온수, 공기청정, 환기 기능의 원격제어 회  
전식 전전화 공조 시스템 기술

#### 3. 내용요약

<분야>

기계설비 > 건설기계 > 공기조화/냉난방설비

<기술의 요지>

실내 열회수와 히트펌프를 이용하여 냉·난방, 제습, 온수, 공기청정, 환기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스  
사용없이 전기(또는 태양광)로만 가능한 공조 시스템 기술로써 4계절 쾌적한 실내 온·습도 유지와  
결로 방지, 열교환소자 재사용이 가능하며, 핸드폰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제어장치로 에너지절감  
및 제로에너지빌딩(ZEB) 구현에 적합한 기술임

<범위>

실외공기 공급과 실내공기 배출 환기부, 액체저장부, 이물질제거 필터부, 열교환부, 원격조절과 모  
니터링을 위한 룸컨트롤러와 핸드폰으로 구성되어 냉·난방, 제습, 온수, 공기청정, 전열교환기를 하  
나의 시스템으로 제어할 수 있는 회전식 전전화(全電化) 공조 시스템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